

고압가스제조 []신고서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 고 인	상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세부내용	사업소 소재지
	고압가스의 종류

변경사유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내용 (변경신고의 경우만 작성 합니다)	사업소 위치		
	고압가스의 종류 또는 압력		
	저장설비의 교체,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냉동설비의 교체 또는 능력		
	상호		
	대표자 성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압가스제조 [] 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 시: 사업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2. 변경신고 시 가. 사업계획의 개요 중 변경된 부분을 적은 서류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 방법

- 대표자 성명 기재란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조항 대상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 생년월일 기재란에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시, 동일 사업소 내 여러 개의 고압가스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에 고압가스 시설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1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 절차

신고	→	접수	→	검토	→	증명서 작성	→	등록증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붙임)

상호·대표자 변경에 따른 일괄 신고 대상시설 목록

고압가스 시설 허가번호